## KOSHA GUIDE

C - 54 - 2012

- (2) 측량 작업장까지의 이동시 이동 경로에 급경사면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경우 우회 하여 이동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3) 측량작업 중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시키며, 상·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전도 방향을 근로자에게 인 지시키고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켜야 한다.
- (4) 측량 작업장이 급경사인 경우 지면의 평탄작업, 안전난간의 설치,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경사면에서 전도, 전락에 의한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측량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뱀이나 독충에 의한 상해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용 구급약품을 제공하고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.

## 5.2 굴착준비

- (1) 굴착기계는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굴착기초 사면의 붕괴 및 흙막이 작업에 장해가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- (2) 경사지역의 경우에는 경사면을 절취하는 등 평탄작업을 선행하고,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받침판을 설치하는 등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기계는 지형·지반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하며, 굴착기계를 설치하는 지형의 한계 경사각은 30°이하 이어야 한다.

## 5.3 굴착작업

## 5.3.1 라이너플레이트 시공 준비

- (1)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굴착 깊이에 필요한 L.P의 필요 수량을 준비하고, 보강링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앵글 폭과 단수를 확인하여 필요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 다.
- (2) 굴착 작업장 주변에는 안전난간, 방호울(Fence) 등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등의 안전 표지는 L.P로부터 약 2 m 정도의 거리에 부착하여야 한다.